

2026년 제3회 대구구치소 한시임기제 공무원 [8호, 공업[기계]]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대구구치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대구구치소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채용분야	임용직급	선발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공업 (일반기계)	공업서기 (한시임기제 8호)	1명	채용일 ~ 27. 5. 2.까지	대구구치소 복지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

- 최종합격자는 대구구치소 공업직 공무원(휴직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됨
- 채용기간 : 채용일 ~ [2027. 5. 2.까지](#)
- 근무시간 : 주 35시간(월~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기관 특성상 시간외·야간·휴일 근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함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공업[기계] (공업서기)	한시임기제 8호	○ 「교도관직무규칙」 제86조 해당 업무 ▪ 교정시설 기계 점검 및 정비 ▪ 에너지 관리, 보일러 취급 및 관련 시설유지 관리 등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및 제16조(경채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 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89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82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정년(60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임용예정직급	자격 및 경력요건
한시임기제 8호 (공업서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격증 소지자 중」 ①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 에너지관리기능장 - 에너지관리기사 ②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③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에너지관리기능사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에너지관리자격증으로 통합되어 폐지된 자격증(예 : 열관리, 보일러)은 유효하게 인정함 • 에너지관리자격증 : 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자세한 임용예정업무 및 관련분야는 [붙임 2] 직무기술서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 - 주요자격 및 경력요건'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4대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수행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객관적인 증명을 인정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 반드시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하며, 근무기간 및 시간, 담당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서로 근무 기간이 검증되어야 실제 경력으로 인정
 - ※ 근무경력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은 제외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 재직월수는 재직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고 1개월 미만은 일수로 계산하여 합산하며, 총 합산경력 중 30일 미만은 버림하고 30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
 - ※ 경력(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시간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더라도 검증단계에서 시간제 경력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자료 제출
 - ※ 폐업사실증명원 +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등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나.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방법 : 개별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 · 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헌신 · 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 · 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윤리 · 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제32조 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9. 18.(금) ~ 10. 2.(금)	'26. 9. 29.(화) ~ 10. 2.(금)	'26. 10. 14.(수)	'26. 10. 21.(수)	'26. 10. 27.(화)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필요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9. 29.(화) ~ 10. 2.(금)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대구구치소 총무과 인사팀(053-740-5203)

- (우 4206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 ~13:00 제외) 내에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인정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 겹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으로 표기

※ 우편접수 시 응시번호는 접수 당일 응시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배부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나. 제출서류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서식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	○ 별지서식 제2호
	③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7호
	⑧ 자격요건 관련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⑨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 별지서식 제8호
	⑩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별지서식 제9호
	⑪ 공정채용 확인서(응시자용) 1부	○ 별지서식 제10호
	⑫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급)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⑬ 자격요건 관련 경력(재직)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원본 1부	
	⑭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부	
	⑮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1부	
	⑯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 별지서식 제11호
	⑰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1부	○ 별지서식 제12호

※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모든 증명서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함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함
경력증명 (경력증명서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서)	※ 경력증명을 위해서 ① 경력증명서 ② 4대 보험 이력확인서 ③ 소득금액 증명서 → ①②③ 모두 제출해야 함 ① 경력증명서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근무부서·근무 기간(년·월·일)· 근무 형태(상근 등, 주당 근무시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

	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2년 인정)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4대 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③ 소득금액 증명서 ▶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인터넷(www.hometax.go.kr)이나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외국어 작성 증명서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원서접수기간 내에 대구구치소 총무과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공통(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별지서식 11】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시 이력서 상에 기재한 사항 중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됩니다.
- 근무예정 직위에 대한 직무의 주요내용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은 직무기술서 【붙임2】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

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본인의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8 신분,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신분 : 한시임기제 8호 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임용예정일 : 2026. 11. 초순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채용일 ~ 2027. 5. 2.까지(예정)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에서 정하는 임용직급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주 35시간 근무]

※ 한시임기제 8호 봉급기준액: 2,378,300원(주 40시간 기준)

-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른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

- 4대보험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건강보험은 의무적 가입, 고용보험은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때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할 수 있고, 동 기간이 지났을 때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관계 법령 및 인사혁신처의 각종 지침에 따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문의사항 : 대구구치소 총무과(☎053-740-5203)
- 그 외 직무 관련 문의사항 : 대구구치소 복지과(☎053-740-525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공업서기[기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공업[기계]		한시임기제 8호	1명	대구구치소 복지과
주요 업무		○ 보일러 및 상하수도 시설관리 - 열관리(보일러)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 - 보일러 등 기계시설의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 상하수도 및 오수처리시설의 일상점검 및 관리 등 ○ 기타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국민소통공감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문제해결방안 도출능력 ○ (직렬별 역량) 관련분야 전문지식, 기술능력, 유연한 사고, 즉각적 대응능력		
필요 지식		○ 보일러 및 상하수도 등 기계시설 관리를 위한 지식 ○ 유사실 보일러 등 기계조작 및 응급조치 관련 지식 ○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작성 및 활용 지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교정 관계 법령 지식 등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u>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3년 이상 및 기능사 자격 취득 이후 4년 이상</u> 관련분야(열관리, 보일러 취급 등) 근무경력자 - 기 능 장 : 에너지관리 - 기 사 : 에너지관리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 - 기 능 사 : 에너지관리 +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에너지관리자격증으로 통합되어 폐지된 자격증 (예 : 열관리, 보일러)은 유효하게 인정함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번호	제출서류명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필수	☐
2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	필수	☐
3	이력서 1부	필수	☐
4	자기소개서 1부	필수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필수	☐
8	자격요건 관령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필수	☐
9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필수	☐
10	부패방지권익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필수	☐
11	공정채용 확인서(응시자용) 1부	필수	☐
12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필수	☐
13	자격요건 관련 경력(재직)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원본 1부	해당자만	☐
14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u>1종</u> 1부	해당자만	☐
15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1부	해당자만	☐
16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해당자만	☐
17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1부	해당자만	☐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고, 제출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성명

(서명)

응 시 원 서

본인은 대구구치소 2026년도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공업)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구구치소장 귀하

※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작성	성명	(한글)
응시직급	한시임기제 8호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대구구치소 공업직 공무원)

※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작성	응시직급	한시임기제 8호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대 구 구 치 소 장 ⑨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도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한시임기제 8호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그 외 ‘해당없음’으로 기재함
6. 정부수입인지 : 우체국 등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부착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출력물을 응시원서 뒤에 첨부
 - 한시임기제 8호 : 5천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서식 3]

이력서

1. 공 통 사 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기관	대구구치소	성 명	
		응시직급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		

2. 응 시 자 격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근 무 경 력	근무기관명	근무기간	근무형태	직위	담당업무
	예 시) OO회 사	10.1.1.~11.12.31. ※ 휴직기간 및 사유기재	전 임 (주 40시 간)	사 원 (9급)	보 일 러 관 리
			시 간 제 (주 20시 간)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관련분야 근무경력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요망)

- ① 근무경력은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만을 기재
- ② 근무일자, 퇴직일자는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 담당업무 상세기재
- ③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별지서식 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 공업직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2026. . . 작성자 : (인/서명)

※ 14포인트, 휴먼명조체(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분량은 A4용지 2쪽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 공업
----	--	-----------	-----------------

◎ 직무수행계획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등의 순으로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2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6. . . 작성자 : (인/서명)

- ※ 14포인트, 휴먼명조체(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분량은 A4용지 2쪽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대구구치소에서 시행하는 2026년 제3회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공업)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 자격증,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내용의 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구구치소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구구치소장 귀하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⑫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대구구치소장 귀하

【별지서식 9】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u>부패행위 비해당</u>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u>부패행위 해당</u>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구구치소장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 대구구치소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관계 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촌 이내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고지

-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해당 직원 소속, 성명
-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대구구치소장 귀하

【별지서식 1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구치소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시 험 종 류	2026년도 제3회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공업) 경력경쟁채용시험		
반환신청인 관련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응 시 번 호			
현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e-mail)
반환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 반환받을 계좌번호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 명의의 계좌(계좌사본 첨부)를 기입하십시오.			
응시수수료 반환 사항			
구분	반 환 사 유	응시수수료 납부액	반환청구금액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과오납		
☐	시험실시기관 귀책사유로 응시 불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응시수수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대구구치소장 귀하			